2024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하여 지역 공예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예창작지원센터의 2024년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합니다.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12월

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
목 차

Ⅰ. 사업개요 ····· 1

Ⅱ. 공모개요 ····· 3

Ⅲ. 선정절차 및 방법 ····· 6

Ⅳ. 기타사항 ····· 9

Ⅴ. 공모서류 작성 가이드 ····· 10

별첨. 공모 신청서류 (양식 모음)

Ⅰ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ㅇ 공예기술 또는 소재산업이 집적된 곳을 선정하여 생산, 전시, 판매, 체험 기능을 갖춘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의 공예거점 마련
- ㅇ 작가(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)의 폭넓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스페이스의 기능으로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로드맵 제시

□ 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
□ 사업내용

- ㅇ 전국 광역·기초자치단체/사업수행단체를 대상으로 공예창작지원센터를 공모 및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을 지원
- ㅇ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로서의 운영전략 및 계획 수립
- ㅇ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공예창작지원센터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
- ㅇ 매년 결과보고회 및 지속지원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

1차년도	2차년도 이상
기반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, 시범 프로그램 운영	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

□ 사업추진일정

- ○ 공모 및 접수 : ‘23년 12월 ~ ‘24년 1월
- ○ 공모 설명회(온라인) : ‘23년 12월 20일
- ○ 공모 심사(1차 : 서류심사, 2차 : 발표 및 현장심사) : ‘24년 1월 초 ~ 2월 말
- ○ 최종 선정 결과발표 : ‘24년 2월 말
- ○ 업무협약 체결(진흥원-지방자치단체-수행기관), 착수보고 : ‘24년 3월
- ○ 사업수행(기반 조성, 콘텐츠 계획 및 운영 등) : ‘24년 3월 ~ 12월
- ○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: ‘24년 5월 ~ 12월

○ 중간보고(기반 조성 및 콘텐츠 계획 완료), 시범운영 : ‘24년 3월 ~ 12월

○ 결과보고(성과공유), 지속지원 평가 : ‘24년 11월

○ 국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,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: ‘24년 12월

□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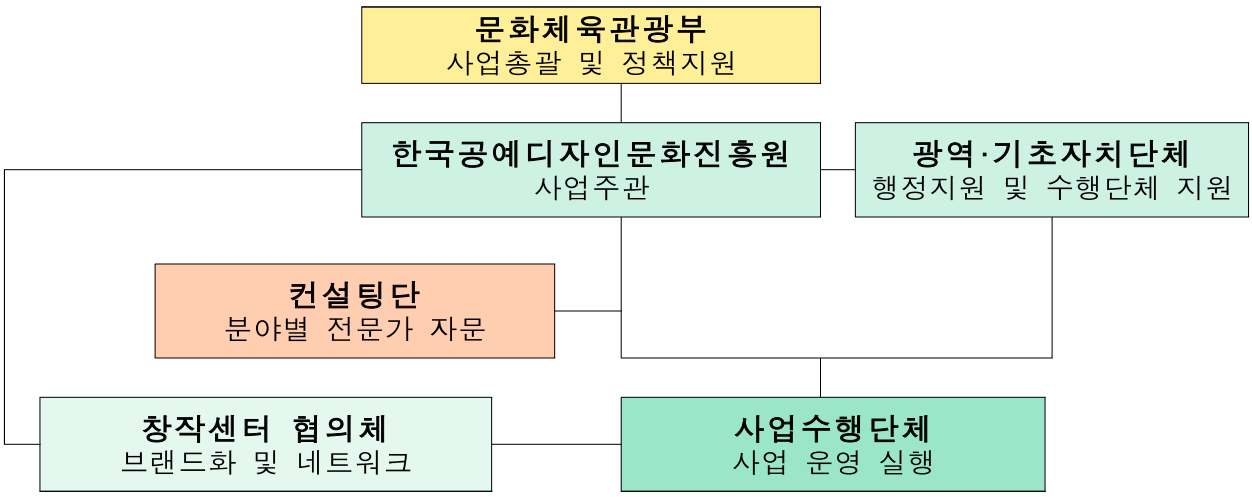

구 성	역 할
문화체육관광부 (주최)	○ 사업 총괄 및 정책 지원
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(주관)	○ 대상지 선정 및 사업평가 ○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감독 - 추진사항 관리(정기보고, 주1회) 및 평가 - 예산 집행사항 관리 ○ 컨설팅단(자문단) 운영 및 컨설팅 지원
광역·기초자치단체	○ 사업대상지 공간 및 예산(지방비) 확보 ○ 수행기관 지정 및 총괄책임자 선임 ○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수행단체 지원 ○ 사후 공간 운영 및 관리(유지·보수)에 대한 감독
사업수행단체	○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 - 기반조성 및 콘텐츠(프로그램 등) 운영계획 수립 * 지역 공예인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(필수) -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○ 사업 성과관리(만족도, 이용률 등) 및 보고(설명회, 결과보고 등) ○ 사후 공간 운영 및 관리(유지·보수)

공모개요

□ 공모명 : 2024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

□ 공모 대상

○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이 가능한 광역·기초자치단체와 사업수행단체

구 분	내 용
광역·기초 자치단체	**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** 예산(지방비)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* 지방비(자부담 포함)는 국비의 30% 이상 매칭 필수 **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** * 공모 신청 전 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확정해야 함 * 수행기관(컨소시엄 불가) 지정 및 총괄책임자(센터장)선임 필수
사업 수행단체	공예 문화 사업 관리·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, 사단/재단법인 * 사업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2년차부터 5인이상 전담 운영팀 구성 필수

□ 지원 규모

○ 선정규모 : 공예창작지원센터 1 개소

공예창작지원센터는 2~5개 이내의 공예 분야 기술 장비 및 디지털 장비 운용이 가능하며 공예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의 공예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
* 전국 7개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 중(2023년 기준)

○ 지원예산 : 총 3억원 이내

국비	지방비 (자부담 포함)	1년차 운영 내용
총 3억원 이내	국비의 30% 이상 매칭	· 공예창작지원센터 기반조성 : 공간 + 설비(장비, 기자재) · 공예창작지원센터 콘텐츠 운영 계획 수립 ·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개관식

* 총 3억원 이내에서 지원 규모에 맞춰 신청 가능하며, 공모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최종 확정

○ 지원조건
- 국비의 30%이상 지방비(자부담 포함) 매칭 필수 포함

* (예) 지방비 필수 매칭 지원금액(안)

단계	1년차	2년차	3년차
국비	300백만원 이내	150백만원 이내	100백만원 이내
지방비 (자부담 포함)	90백만원 이상	45백만원 이상	30백만원 이상

* 단계별 지원금액(안)은 정부예산 확정, 센터별 연속 지원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매년 지속 지원 평가 후 연속 지원 확정 (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)

□ 신청요건

○ 공간 요건

-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물 준공이 완료된 공간으로 조성공간이 전용 면적이 1,000㎡ 내외 규모, 상시 운영 가능한 곳
  * 공모 시점 공사 예정인 공간 불가
  * 인테리어를 통해 즉시(6개월 이내) 개소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공간
- 공모 신청기관 소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간
-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이 가능한 공간
  * 지역 공예 관련 자원이 인접하고 접근성 등 우수한 공공성격의 공간
- 공간 계획 시 창작 공간 구성 필수
  * 공간구성 아래 표 참고

공간구성		기 능
필수공간	다목적 공간	전시, 판매 등 센터 특성을 고려한 지원 공간 교육, 회의, 세미나 등 네트워킹 공간
	창작 공간	다양한 장비 활용하여 공예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
별도공간 (예시)	운영지원 공간	행정관리, 운영사무실 등 지원 공간
	* 별도공간은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제안 가능	

○ 인력 요건 : 총괄책임자(PM) 포함 전담 운영인력 5명 이상

* 공예창작지원센터 인력(최소인력) 구성은 아래표 참고

구 분	역 할	인 원	비 고
총괄책임자	총괄 기획 및 운영·관리	1명	상근
기획자	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담당	1명	상근
행정	예산 집행 기타 행정업무	1~2명	상근
장비/시설/교육	장비 운영·관리 전시, 교육, 판매·유통 등	장비·운영·관리 및 교육 1인 공예 분야별 1명 이상	협의 통해 비상근 가능

* 1차년도 : 총괄책임자 및 행정인력(입찰, 계약 및 집행, 정산 등) 1명 이상 필수 상근

* 그 외 운영인력은 신청기관이 필요한 인력 제안, 인력운용 계획 수립 가능

□ 공모일정

○ 공모기간 : ’23년 12월 08일 ~ ‘24년 1월 24일 (48일간)

○ 접수기간 : ’24년 1월 15일 ~ 1월 24일 17:00까지

※ 공모접수 결과 대상지 선정 규모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

○ 온라인 공모설명회 : ‘23년 12월 20일(수) 15시

- 내 용 : 공모 및 사업 관련 안내
- 참여방법 : 접속 링크(QR코드)를 통한 사전 신청

○ 서류심사(1차) 및 발표심사(2차) : ’24년 1월 말 ~ 2월 초

* 발표심사 대상기관 서류심사 결과 후 개별 통보

○ 현장심사(2차) : ‘24년 2월 중

* 현장심사 대상기관 발표심사 결과 후 개별 통보, 대상기관과 협의 후 심사일 확정

○ 결과발표 : ’24년 2월 말 (예정)

※ (재)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(www.kcdf.kr)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

□ 공모접수

○ 접수기간 : ‘24년 1월 15일 ~ 1월 24일 17:00까지

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. 접수 마감시간 엄수

○ 접수방법 : 광역·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단체 개별 공문접수 후

사업수행단체는 이메일 추가 제출
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, 공모 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

○ 접수메일 : craftcenter@kcdf.kr

메일 제출시 접수공문 포함, 공모 신청서류 일괄 제출

- 메일 제목 [(신청기관명)] 2024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신청
  · 예시 : [광역·기초자치단체/수행단체] 2024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신청

○ 문의 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정책팀

전화 02-398-7957, 7958 이메일 craftcenter@kcdf.kr

* 문의 시간 : 평일 10:00～17:00 (점심시간 12:00～13:00 제외)

□ 공모 유의사항

○ 공모신청을 위한 서류(제출서류 일체, 증빙서류 포함)는 공고일 기준 최대 3개월 이전 서류만 유효함

○ 공모접수시 접수기간(마감 시간) 내 공모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됨

○ 공모접수 후에는 제출서류의 수정·변경이 불가하고 제출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Ⅲ 선정 절차 및 방법

□ 선정 절차 및 방법

○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(적격성) → 2차 발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

- 1차 심사 : 제출된 공모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성 판단

  * 공모 신청요건,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

- 2차 심사 : 발표심사(50%)+현장심사(50%) 결과 종합하여 최종 선정

  *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최종 대상지 선정(최고점, 최저점 제외)
    평균 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

○ 선정 절차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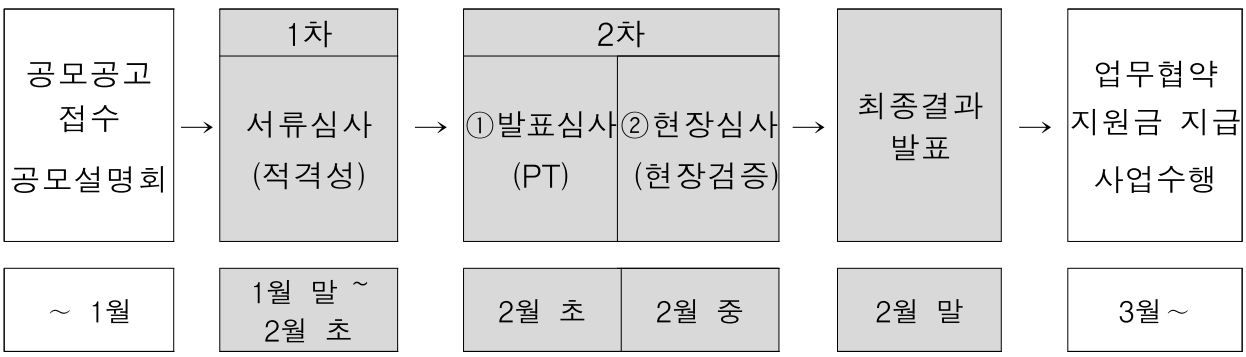

○ 심사 방법

1차(서류)심사 (1월 말~2월 초)	○ 평가방법 : 공모 신청요건, 제출서류 작성 지침 준수 여부 등 확인(적격성) ○ 결과발표 : 발표심사 대상기관 개별 통보 * 발표심사 대상기관 발표(PT)자료 제출, 제출 일정 대상기관 개별 통보
↓	
2차 ① 발표(PT)심사 (2월 초)	○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작성한 PT 자료 발표(30분 내외) PT 발표 후 질의응답 * 발표자 : 총괄책임자(PM), 발표순서 : 공모접수 순 ○ 현장심사 대상 : 발표심사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○ 결과발표 : 현장심사 대상기관 개별 통보
↓	
2차 ② 현장심사 (2월 중)	○ 평가방법 : 제출서류 및 발표심사를 바탕으로 현장검증 및 현장성 평가 * 현장심사 대상기관과 협의 후 심사일 확정 ○ 결과발표 : 발표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합산 후 최종 선정
↓	
최종결과 발표 (2월 말)	○ 평가방법 : 2차심사(발표심사 50% + 현장심사 50%) 종합하여 최종 선정 *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최종 대상지 선정(최고점, 최저점 제외) ○ 결과발표: 공진원 홈페이지 및 대상기관 개별 통보
↓	
업무협약 사업수행 (3월~)	○ 사업수행을 위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* 선정기관은 심사 결과(의견)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○ 업무협약체결(공진원, 광역·기초자치단체, 사업수행단체) 및 지원금 지급 ○ 1차년도 사업수행 ('24년 3월 ~ '24년 12월)

○ 심사기준 및 항목

- 평가항목 및 배점 : 2차(발표) 심사

평가항목	평가 요소	배점
사업의 적절성	[지역연계성] 지역공예종사자 의견수렴 반영 등 계획 적정성, 지역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	30
	[인프라우수성] 공간, 설비(기자재·장비), 지역 보유 인프라의 우수성	
	[입지우수성] 대상지 접근 용이성, 지역 공예자원·공예산업 등 입지의 우수성	
사업 수행요소	[사업이해도]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,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	50
	[사업계획] 공간 및 콘텐츠 계획 구성의 적절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
	[추진계획] 추진 일정의 적정성.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, 프로그램의 차별성	
	[사업역량]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(총괄책임자 등 인력구성) 전문성,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열정	
	[예산계획] 예산확보 예산 배분의 적합성,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	
지속가능 요소	[성과 환류 계획성]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 추진 파급 효과성	20
	[지속발전가능성] 향후 자립화 방안의 우수성, 중장기적 성과목표의 타당성	
합계(점)		100

- 평가항목 및 배점 : 2차(현장) 심사

평가항목	평가 요소			배점
사업의 적절성 현장 검증	[입지적절성] 대상지 접근 용이성, 공예자원·공예산업 등 입지의 우수성			30
	[인프라우수성] 공간, 설비(기자재·장비), 총괄책임자, 수행기관 등 인프라의 우수성			
	[공간적정성] 공모요건에 부합하는 공간 구성, 공간 동선 등 대상지 공간의 적정성			
사업수행 요소	공간	토지	면적, 시설용도, 공간(사용 허가) 등	50
		건축물	등기부등본, 용도, 건축년도, 층수, 구조, 건축물 인·허가 대장 등	
		용도	토지 이용계획의 적합 여부 등	
	운영	역량	추진체계·인력구성, 사업이해 및 추진 의지, 기획·운영 전문성 등	
		콘텐츠	공간 운영 적절성, 프로그램 구성 전문성 등	
현장성	대상지 특수성 고려한 현장검증 등			20
	기타 서류 및 발표심사로 판단 불가한 현장 사항 등 확인			
합계(점)				100

* 서류 및 발표심사 중 현장검증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요소 현장 심사 시 최종 확인 후 평가

Ⅳ 기타사항

○ 공모 심사 결과 자격 미달 등 사유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는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선정된 기관은 주관처가 진행하는 컨설팅, 사업평가, 보고회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.

○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,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야 합니다.

○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공모 지원이 불가하고 공모 지원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①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기관 및 단체

② 유사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

③ 향후,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

④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였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

⑤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, 업무협약 및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* 최종 선정기관은 업무협약 시, 참여 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 서약서 제출 필수
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
- 성범죄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업무협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

○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공예창작지원센터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지원금액은 정부

예산 확정과 센터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<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지표(안) >

○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세부내용	배점	평가방식
사업성과 (50)	창작지원	· 장비/시설 지원 수	10	정량평가
		· 개발 지원 수	10	
		· 유통 지원 수	10	
	홍 보	· 홍보프로그램 운영 수	20	정량평가
사업관리 (50)		· 예산(직접비) 집행률	5	정량평가
		· 인력관리 적절성	5	정량평가
		·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적절성	10	정량·정성 평가
		· 성과관리 적절성	20	정성평가
		· 사업효과성	10	정성평가
가점(+10)		· 매출기여율	5	정성평가
		· 예산(지방비/자부담) 확보 증가율	5	정성평가
감점(-10)		· 중간점검 집행률 50% 미달	10	정량평가
계			100(±10)	
등급부여		· A등급(90점 이상) ~ D등급(60점 이하) 5단계 등급부여 - A등급(90점 이상), B등급(90점 미만~80점 이상), C등급(80점 미만~70점 이상), D등급(70점 미만~86점 이상), E등급(60점 이하)		

○ 평가등급 : 평점에 따라 A(우수) ~ F(부진) 5개 등급으로 분류

등급	A(우수)	B(양호)	C(적합)	D(미흡)	F(부진)
평점기준	90점 이상	90점 미만 ~80점 이상	80점 미만 ~70점 이상	70점 미만 ~60점 이상	60점 미만
	20%증액	10%증액	평균	30%감액	사업 취소
평가대상	10%	20%	40%	20%	10%

- 우수사업(A등급) : 당초 계획의 취지를 잘 살려 목표 이상의 성과를 보인 사업
- 양호사업(B등급) :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
- 적합사업(C등급) : 일부 경미한 문제가 있는 향후 개선·보완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행 조건부 승인
- 미흡사업(D등급) : 중대한 보완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 된 사업으로 향후 사업계획 보완
- 부진사업(F등급) : 사업 문제 발생 및 총체적 보완 사업

Ⅴ 공모서류 작성 가이드

□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

○ 사업계획서는 공모의 심사기준(평가항목)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과 향후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전제로 작성

○ 공예창작지원센터 신청기관은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<u>최소 5개년 이상</u>의 추진 사업 방향을 작성

1차년도	2차년도 이상
기반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범 프로그램 운영	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

○ 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작성시 연차별 계획 및 수행내용을 참고하여 조성 후 공간 및 프로그램 등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

* 아래「공예창작지원센터 연차별 수행계획(안)」표 참고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수행계획</th><th colspan="3">1차년도</th><th colspan="2">2차년도 이상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반조성·운영</td><td rowspan="2">공간조성</td><td rowspan="3">기반조성 계획수립</td><td>공간설계 및 시공</td><td rowspan="3">시범운영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공간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
설비(장비, 기자재) 유지 및 관리</td></tr>
<tr><td>설비계획 및 구축 (장비/기자재)</td></tr>
<tr><td>운영시스템</td><td>온·오프라인 플랫폼 기획 및 구축</td><td>(온라인)
플랫폼 운영 관리
(가입 예약 정보제공 등)</td><td>플랫폼 운영 관리
운영 활성화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브랜드(CI)</td><td>CI 기획 및 개발</td><td>매뉴얼 적용</td><td colspan="2">운영 매뉴얼 활용(각 프로그램 등 적용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콘텐츠 운영</td><td rowspan="2">콘텐츠 구축·운영 계획수립</td><td rowspan="2">공간 및 콘텐츠 구성에 따른 운영계획</td><td rowspan="2">시범운영</td><td>콘텐츠 구성에 따른 공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</td><td>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신규 프로그램 개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국 센터 필수 프로그램 운영
(지역 특화 공예상품 개발 최소 5건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인프라 구축</td><td colspan="3">지역 인프라 구축
(공예시설, 학교, 기관, 사업체 등)</td><td>지역 인프라 협력 교류
(공예 기관·단체 협력 MOU 등)
권역별 거버넌스 구축</td><td>커버넌스 협력 네트워크 강화
지역 권역 인프라 교류 확산
(전시, 축제 등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연구 아카이브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지역기반 공예연구
(공예자원, 기술, 산업 등)</td><td>지역 공예연구
공예(소재, 기법 등) 아카이브</td><td>공예 연구 아카이브 기반 프로젝트(상품, 출판 등)</td></tr>
<tr><td>중장기 발전방안 연구</td><td>지역 공예 발전방안
공예 담론의 장 형성
(토론회, 세미나 등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홍보</td><td colspan="5">각 성과에 따른 단계별 홍보
성과목표 달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</td></tr>
</table>

「공예창작지원센터 연차별 수행계획(안)」

○ (공예인 수요조사) 공모 신청기관은 해당 지역 공예인 수요조사(의견수렴)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수요조사의 결과가 지역 공예창작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함

* 수요조사는 지역 공예 관련기관(협·단체 등), 대학, 지자체, 수행기관 및 지역 공예인(30인 이상, 필수) 등 지역의 공예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요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

○ (인력) 운영인력은 공모요강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운영인력의 구성, 직무 관련 내용, 조직구성 등 운영인력 계획이 상세히 드러나도록 작성
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차년도 총괄책임자 및 행정인력(입찰, 계약 및 집행) 1명 이상 필수 상근,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등 고려하여 1차년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채용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

-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업의 영속성과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을 권장하고 사업기획자의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채용(기존인력 중 선정) 필요

○ (공간) 공모요강의 신청요건(공간 면적, 사용승인 등)을 충족하고 상시 운영 가능하며 지역 공예 관련 자원의 인접성,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의 공예생태계가 발달 가능한 공예의 거점 공간임을 제시

- 공간의 구성은 창작 공간(필수)과 생산, 판매, 체험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

○ (기자재·장비 구축) 공예 분야 특성, 지역 공예인의 수요 반영하여 공예 창작활동이 용이하고 공예 분야 간 융합·확장 등이 가능한 기자재·장비 구축계획 수립

- 공모 신청기관이 보유한 기존 기자재와 장비가 있는 경우,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구입에 따른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야 함

- 공예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 기자재·장비, 디지털 기자재·장비 등 개인의 구입이 불가한 전문 장비 구축 고려

○ (운영시스템) 온라인 운영플랫폼(포탈 및 기 홈페이지 등)을 활용하여 센터 운영정보, 프로그램 소개, 예약 등 운영·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 제시

□ 예산 집행계획 작성 가이드

○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,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함

○ 사업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과대 계상 불가하며 사업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불가함

○ 총사업예산은 국비(국고보조금)와 지방비(자부담 포함)를 합산한 것으로 아래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과목별 내역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

-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
-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-3호)
-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)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내부 규정 준용

○ 예산의 집행에 있어 국비·지방비(자부담 포함)는 구분하여 집행하고 지방비는 지방비 예산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집행·정산하여야 함.

○ 지원금(국비)은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및 집행· 정산되어야 하며 지원금(국고보조금)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타 사업 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
* E-나라도움 시스템 매뉴얼 <보조사업자 교육교재> 참고하여 진행

○ 구매 및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, 부득이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별도 진행할 수 있음

○ 지원금(국비)의 예산별 집행 가능 항목 외 예산은 지방비(자부담 포함)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

* 예산 집행 가능 항목은 아래 예산과목별 내역(국비) 참조, 지원금(국고보조금) 인건비 집행 불가

○ 예산 집행계획시 지원금(국비) 집행분에 대한 회계감사 수수료 반영하여야 함

○ 예산 집행계획시 세부 과업별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산출시 항목별 편성기준에 맞춰 세부적인 내역 작성

* 예산산출 및 편성 방법 예시

○○○재료 (단가)×(인원)×(횟수)=(산정예산))

○○○프로그램 (단가)×(인원)×(횟수)=(산정예산))

○ 수익사업은 2년차부터 협약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센터 이용자로부터 적정 규모의 참가비, 재료비,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함

○ 수익사업 추진 시 수익금의 범위, 사용목적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기재하여 승인 필요하며, 집행내역은 별도 보고가 필요함 (수익금 집행관련 증빙 절차는 본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과 동일하게 적용함)

○ 발생한 수익금 총액은 공예창작지원센터에 재 투입하여야 하며, 수익금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확장을 위한 용도로 매년 수익금 내역(발생 및 집행)은 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정산해야함

○ 수행기관에 사업비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함.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

□ 예산과목별 내역(국비)

○ 예산 집행계획서 작성시 지원금(국비)은 아래 표의 집행 가능 예산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필요 예산은 지방비(자부담 포함)로 예산계획 수립 * 지방비는 지방비 예산과목별 내역에 맞춰 계획수립
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보조항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일반
수용비</td><td>전문가
활용비
·
개인
사례비</td><td>● 기타직 및 일용직 외 전문인력의 디자인, 사업 관련 기획·연구 등과 관련한 개인 사례비, 전문가 활용비
[산정기준]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책임연구원</td><td>월 3,496,704원</td><td>장관(차관), 대학총장, 기관대표급</td></tr>
<tr><td>연 구 원</td><td>월 2,681,226원</td><td>서기관급 이상, 조교수급</td></tr>
<tr><td>연구보조원</td><td>월 1,792,309원</td><td>사무관급 이하, 전임강사</td></tr>
<tr><td>보 조 원</td><td>월 1,344,277원</td><td>단순 보조원</td></tr>
</table>
*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(2023년)
*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-3호) 기준
*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 참여율 50% 산정,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가능
● 운영인력 인건비 집행 불가. 단, 운영 초기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 기간제 계약직 경우 반영 가능(협의 필요)</td></tr>
<tr><td>강의료</td><td>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외부인력의 강의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</td><td></td><td>[산정기준]
<table>
<tr><th>등급</th><th>대상</th><th>금액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장관차관(급), 대학총장(급),
KOSPI상장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장(급)
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의 저명인사(급)</td><td>2시간이하: 300,000원
2시간초과: 450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(단 유관부처제외)
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 사단·법인 5년 이상 근무 재직자 또는 초청 강사
대학 부교수급 이상
그밖에 준하는 전문가</td><td>2시간이하: 200,000원
2시간초과: 300,000원</td></tr>
<tr><td>3등급</td><td>1,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반 강사급</td><td>2시간이하: 100,000원
2시간초과: 150,000원</td></tr>
</table>
*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내 수수료 지급 기준에 준함
* 위 강의료는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 포함된 금액</td></tr>
<tr><td>자문료</td><td>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외부인력의 자문료
[산정기준]
<table>
<tr><th>등급</th><th>대상</th><th>금액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전문가</td><td>입찰 제안서 평가위원</td><td>조달청[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] 준용</td></tr>
<tr><td>입찰 제안서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</td><td>200,000원(서면)
200,000원(3시간 이하)
250,000원(3시간 초과 4시간 이하)
300,000원(4시간 초과)</td></tr>
<tr><td>컨설턴트</td><td>변호사,회계사등 이에 준하는 면허소지자</td><td>실 소요금액</td></tr>
</table>
*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내 수수료 지급 기준에 준함</td></tr>
<tr><td>재료
물품구입비</td><td>●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, 소모성 물품구입비
* 재료, 물품 등 구입시 정부권장사항(조달청 구매 우선 업체선정 등)을 준수</td></tr>
<tr><td>회계검사
수수료</td><td>● 사업예산 지원금(국비)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
[산정기준]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
<table>
<tr><th>사업비</th><th>수수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2억원이상 - 3억원미만</td><td>894,000원</td><td rowspan="4">※ 부가가치세 포함
※ 당해연도 사업예산에 한함</td></tr>
<tr><td>3억원이상 - 4억원미만</td><td>940,000원</td></tr>
<tr><td>4억원이상 - 5억원미만</td><td>985,000원</td></tr>
<tr><td>5억원이상 - 6억원미만</td><td>1,147,000원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일반
용역비</td><td>용역
계약비</td><td>●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비(CI 개발, 운영계획 수립, 온라인플랫폼 구축, 홍보 리플렛 제작, 디자인비 등)
* 3백만원 초과 예산의 경우 계약건으로 집행</td></tr>
<tr><td>연구
개발비</td><td>연구
개발비</td><td>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(예시: 공예 소재, 기법 등 지역 공예 관련 연구, 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등)</td></tr>
<tr><td>건설비</td><td>실시
설계비
·
감리비</td><td>● 시설 및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건축설계 및 공사의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공사감리비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</td><td>[산정기준]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공사비</th><th>요율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건축
설계</td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12.55</td><td rowspan="10">※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기준
※ 기타 건축물 시공 시,
‘공공발주사업에 대한
건축사의 업무범위와
대가기준’ 내 건축물 종별
구분 확인
※ 공사비: 발주자의 총 예정금액
(자재대 포함) 중 용지비,
보상비, 법률수속비 및
부가가치세 제외 금액</td></tr>
<tr><td>1억원</td><td>11.48</td></tr>
<tr><td>2억원</td><td>9.99</td></tr>
<tr><td>3억원</td><td>8.68</td></tr>
<tr><td>5억원</td><td>7.90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건축
공사
감리</td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2.46</td></tr>
<tr><td>1억원</td><td>2.32</td></tr>
<tr><td>2억원</td><td>1.85</td></tr>
<tr><td>3억원</td><td>1.70</td></tr>
<tr><td>5억원</td><td>1.57</td></tr>
</table>
*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
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) 기준</td></tr>
<tr><td>공사비</td><td>● 건물, 공작물, 구축물 및 부대시설 등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직접 소요 비용(재료비, 노임, 운반비, 수리비 등)</td></tr>
<tr><td>유형
자산비</td><td>자산
취득비</td><td>● 설비(장비·기자재) 등 구매비
* 기자재·장비 구축 계획시 반드시 근거자료(견적서) 제출 필요
* 설비(기자재·장비) 등 자산 구입시 정부권장사항(조달청구매 우선업체선정 등)을 준수
* 취득단가 5백만원 초과 중요재산은 E-나라도움 중요재산 등록</td></tr>
</table>